의안번호	제 363 호	
의 결	2009년 월 일	
연 월 일	(제280회)	

#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09년 4월 29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시필

##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363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년 4월 29일 제 출 자: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가구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내 모든 시군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이 가능하도록 도세 감면신청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현행 자동차 등록업무와 동일하게 도내 모든 시군에서 감면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

### 2. 주요내용

- 장애인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 절차 개선 (신설, 안 32조제3항 및 제4항)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 감면 신청은 도내에서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 장 · 군수에게도 감면신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가 감면 신청 업무를 처리한 경우는 관련서류를 즉시 사용본거지 시장・군 수

에게 이송토록 관련 조문 개정

3. 의안전문 : 붙 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충청북도 안의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에게 이 조례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도세를 감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④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일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감면신청 등) ① (생략)	제32조(감면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_〈신설〉_	③ 충청북도 안의 자동차 사용본
	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
	<u>장·군수에게 이 조례 제2조제3</u>
	항, 제3조제1항 및 제30조의4제1
	항에 따라 도세를 감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
	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u> </u>	④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
	<u>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가</u>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일체
	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
	<u>할 시장·군수에게 즉시 이송하</u>
	여야 한다.

### [관계법령]

### □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 □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 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률 | 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 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 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 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 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 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국가유공자 등이 이전받은 경우와 국가유 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 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4. 이륜자동차

#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 12. 31, 2004. 12. 31, 2006. 5. 12, 2008. 1. 1, 2008. 12. 26>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 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 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4. 이륜자동차
- 제30조의4(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건강가정기본법」제3 조에 의한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 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4. 이륜자동차
- 제3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소식에 의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장의 경우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 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록사무의 관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그위임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

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안에서의 등록사무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당해 시·도안의 다른 등록관청도 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시·도가 아닌 다른 시·도의 등록관청도 이를 처리할 수 있다.